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1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속도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 및 안전 증진 등 효율적인 법인운영과 안전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 대상 노선 특성 반영 및 평가점수 척도 세분화를 위해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별표 및 서식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실시

나. 기존 평가지표의 한계 개선

- 다수법인이 만점인 변별력이 부족한 항목 개선

- 결과 중심에서 예방을 강조한 내용으로 평가지표 개선

(사고결과 위주→사고예방·대응·노력 위주)

- 다양한 노선 특성에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항목 개선

(로드킬 관련 도시부·지방부 등 고려한 평가내용 개선 등)

- 시설물 유지관리 평가지표 개발

(시설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물관리실태, 포장 관리 적정성, 시설안전 개선 노력 등)

다. 가·감점 항목 개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고 발생 시 감점 항목 적용

-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이 미비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된 경우 사고 정도별로 감점 항목 적용(최대 2)

라. 기타 사항

- 각 부문별 항목의 평가내용 세분화

- * 도로안전성(교통안전, 시설안전), 이용편의성(도로편의성, 시설편의성, 이용만족도), 관리적정성(운영 효율성, 도로공공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전화: 044-201-4576, 팩스: 044-201-5591

○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 정보>행정예고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전화 044-201-4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